

#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안전

## 1.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및 정의

### 가. 관리대상 유해물질

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(113종), 금속류(23종), 산·알칼리류(17종), 가스상태 물질류(15종) 등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.

### 나. 유기화합물 (113종)

상온·상압(常壓)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거나 성질이 있는 유기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

### 다. 금속류 (23종)

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있고 전기·열을 잘 전달하며, 전성(延性)과 연성(延性)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

### 라. 산·알칼리류 (17종)

수용액(水溶液) 중에서 해리(解離)하여 수소 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

### 마. 가스상태 물질류 (15종)

상온·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

### 바. 발암성물질

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.

### 사.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

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.

- 선박의 내부
- 차량의 내부
- 탱크의 내부(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)
- 터널이나 강의 내부

- 맨홀의 내부

- 피트의 내부

-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

- 덕트의 내부

- 수관(水管)의 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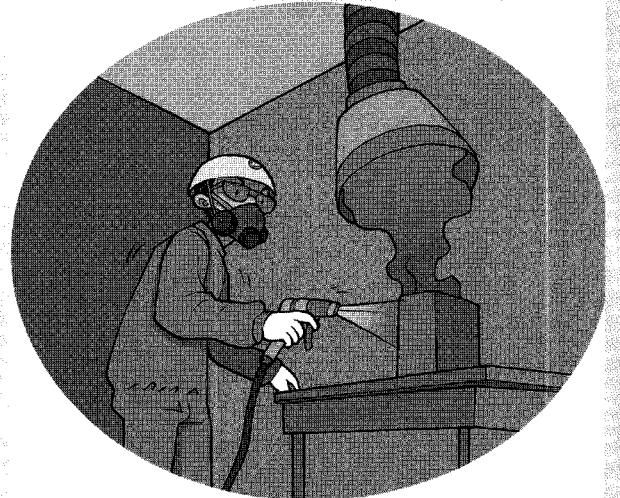
-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

### 아. 임시작업

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. 다만,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.

### 자. 단시간작업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. 다만,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

## 2.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공정 설비기준

### 가. 국소배기장치

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분말 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

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나. 작업장의 바닥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 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#### 다. 부식의 방지조치

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라. 누출의 방지조치

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·플랜지(flange)·밸브 및 콕(cock)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(gasket)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마. 경보설비

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, 산·알칼리류,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(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)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## 바.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

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원재료의 공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3. 관리대상 유해물질 안전작업방법

#### 가. 안전작업방법 준수

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밸브·콕 등의 조작(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냉각장치, 가열장치,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
-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·조정
- 안전밸브, 긴급 차단장치,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
- 뚜껑·플랜지·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

#### 나. 시료(試料)의 채취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
-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
-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

#### 나. 탱크 내 작업안전수칙

-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하도록 할 것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
-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
-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
-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 할 것
-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

#### 다. 명칭 등의 게시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
2. 인체에 미치는 영향
3. 취급상 주의사항
4. 칙용하여야 할 보호구
5. 응급조치와 긴급 방제 요령

#### 라. 출입의 금지 등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,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☺

#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

## 1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

지게차, 화물차량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에 따른 낙하, 전도, 충돌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, 그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가. 전도 등의 방지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나. 접촉의 방지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.

### 다. 화물적재 시의 조치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
-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

### 라.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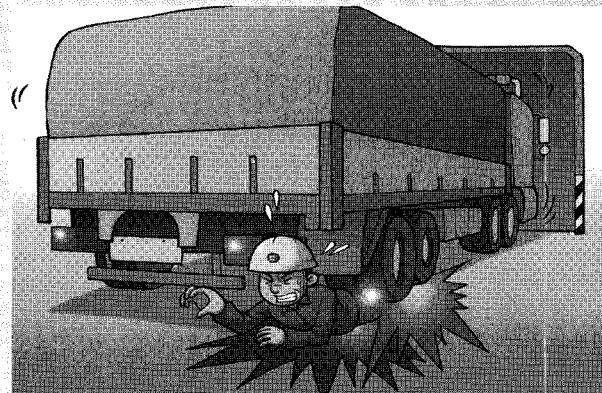
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,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### 마. 싣거나 내리는 작업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(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.) 또는 내리는 작업(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.)

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
-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
-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
-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



## 2. 지게차 작업안전

### 가. 전조등 및 후미등

전조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 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나. 백레스트

백레스트(backrest)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다. 좌석 안전띠의 착용

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3. 구내운반차 작업안전

### 가. 제동장치 등

구내운반차(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
- 경음기를 갖출 것
-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
-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
-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. 다만,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나. 연결장치

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# 4. 고소작업대

#### 가.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

-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일 것
-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
-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
- 봄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
- 작업대에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 승방지장치를 설치
-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

#### 나. 고소작업대 작업안전수칙

-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
-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
-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
-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.
-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
- 전로(電路)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봄,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

무를 확인할 것

-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
- 작업대의 봄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.

### 5. 화물자동차

#### 가. 승강설비

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실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짐걸이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등의 점검

-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
-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
-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
-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을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차수를 지시하는 일

#### 다.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

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
